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정병용 의원

제출일 : 2025. 8.

1. 제안이유

- 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격상하여 결정의 구속력을 높이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안 제9조제1항)
- 나. 위원장 선출방식을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9조제3항)
- 다.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안 제13조제1항)
- 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한중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력 확보, 자율적 운영체계 마련 등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임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